C - 38 - 2011

슬립폼(Slip form) 안전작업 지침

2011. 12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안전보건공단 송효근

ㅇ 개정자 : 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

○ 제·개정 경과

- 2007년 10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
- 2007년 11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
- 2011년 12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
ㅇ 관련규격 및 자료

- 사단법인 한국건설가설협회 : 가설공사 표준시방서
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: 슬립폼(Slip Form) 작업안전 관련 기술자료

○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편 제4장 제1절(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)

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1년 12월 29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C - 38 - 2011

슬립폼(Slip form) 안전작업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4장 제1절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의 규정에 따라 슬립폼 작업과정에서의 안전 작업을 도모하고 재해방지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기계식 인양(Jacking)에 의하여 수직으로 이동하는 슬립폼을 이용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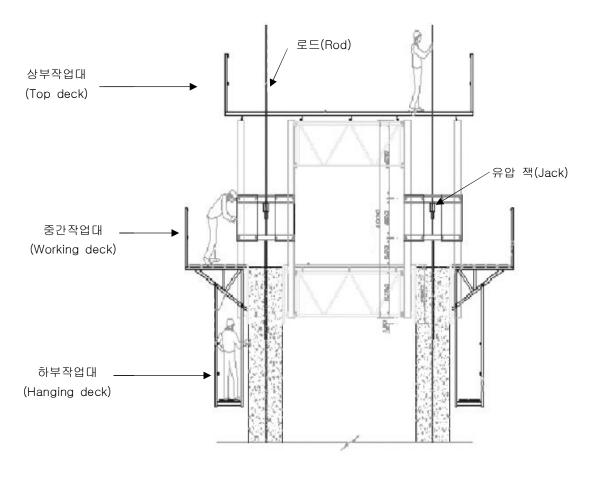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슬립폼(Slip form)"이라 함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가 자립할 수 있는 강도 이상이 되면 거푸집을 상부 방향으로 상승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철근 조립, 콘크리트 타설 등을 실시하여 구조물을 완성시키는 공법에 적용하는 거푸집을 말한다.
- (나) "요크(Yoke)"라 함은 슬립폼에 있어서 콘크리트 측압, 거푸집 하중, 작업 하중 등을 유압 잭(Jack)에 전달하는 부재를 말한다.
- (다) "상부작업대(Top deck)"라 함은 <그림 1>에서와 같이 수직철근 작업 및 콘크리트 공급 등을 위해 슬립폼의 상부에 설치하는 작업대를 말한다.
- (라) "중간 작업대(Working deck)"라 함은 <그림 1>에서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확인, 철근 조립 등의 작업을 위해 슬립폼의 중간 부분에 설치

C - 38 - 2011

하는 작업대를 말한다.

(마) "하부작업대(Hanging deck))"라 함은 <그림 1>에서와 같이 거푸집 상승이 진행됨에 따라 콘크리트의 표면 마감처리 작업, 검사 등을 위해 와이어로 프, 체인 등을 이용하여 중간작업대의 하부에 설치하는 작업대를 말한다.



<그림 1> 작업대의 구조

- (바) "슬립업(Slip up)"이라 함은 슬립폼이 유압잭의 작동에 의해 위로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C - 38 - 2011

4. 슬립폼 작업 시 안전작업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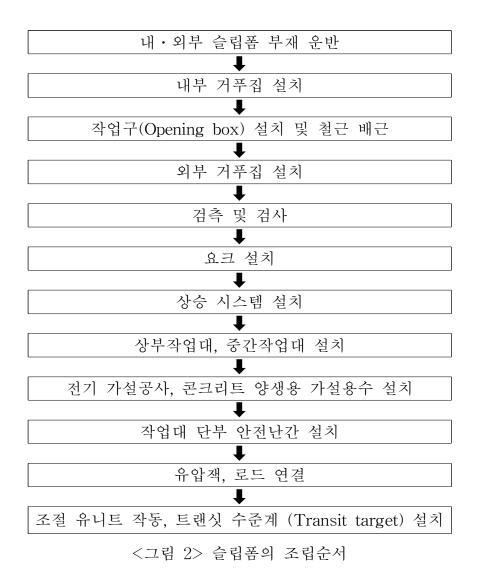
- (1) 공사현장의 제반 여건과 구조물의 형상을 파악한 후 슬립폼의 설치, 슬립업, 해체작업 등 단계별 안전작업 방법과 순서,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등 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2) 슬립폼에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슬립폼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, 로드(Rod)와 유압잭은 거푸집 자중, 작업하중, 장비 등에 충분한 강 도를 갖도록 그 수량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계획서는 슬립폼 공법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중 계획서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공사 목적구조물의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주변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슬립폼 조립에 필요한 가설전기 설치위치와 연약지반일 경우 기초 가시설 설치 등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(5) 구조물의 평면 배치에 따른 양중기 설치 위치를 우선 선정하고, 이에 따른 타워크레인 등의 설치계획 수립과 건설용 리프트의 설치 대수, 위치 설정 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- (6)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설치·해체 등을 하는 때에는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넓이와 지내력이 확보된 작업장을 형성하 여야 한다.
- (7) 철근 조립, 콘크리트 타설, 슬립업 등 작업공종별 투입인원 및 시기 등을 반영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8) 가설전기 시설은 정전을 대비하여 비상발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5. 슬립폼 안전작업 사항

5.1 슬립폼 조립 시 안전조치사항

C - 38 - 2011

(1) 가설공사 및 슬립폼 위치가 확정되면 조립작업을 하여야 하며, 슬립폼의 조립순서는 <그림 2> 와 같다.



- (2) 각 작업대 단부에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 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난간대는 지름 2.7 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. 또한 안전난간하부에는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한 발끝막이판(Toe board)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각 작업대 사이에는 계단, 사다리 등 안전한 승강통로를 설치하며,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추락방지용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

C - 38 - 2011

- (4) 슬립업을 시작한 이후 설치하는 전기시설, 건설용 리프트 등은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여 간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슬립폼 부재 조립 시는 볼트 체결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- (6) 통로 주변은 자재가 적치되지 않도록 크레인 등의 양중기 작업반경내에 자재 야적장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.
- (7) 각각의 작업대에는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.
- (8) 작업시작 전 작업방법, 작업순서 및 안전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
5.2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조치사항

- (1) 콘크리트 타설은 균일하게 20~30 cm 높이로 하며, 거푸집 내부에는 콘크리트 가 항상 일정 높이에 있도록 유지하고, 작업대 위에 남겨진 콘크리트가 경화되어 거푸집 내부로 밀려들어가지 않도록 작업대와 분배기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2)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분배용 슈트를 사용하여 타설 하고 콘크리트가 작업장 내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입하여야 한다.
- (3) 콘크리트를 상부로 운반할 경우에는 상·하부에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장비 운전원 등과 직접 교신을 하여야 한다.
- (4) 콘크리트 운반 시 잔재물 낙하에 대비하여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.
- (5) 철근 조립작업 시 발생되는 개구부 등에는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6) 야간작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모든 작업대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여 75 럭스(Lux)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7) 동절기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또는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질식 재해 예

C - 38 - 2011

방을 위하여 환기 등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619조(밀폐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 수립·시행 등) 내지 제645조(안전대 등)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5.3 슬립업 시 안전조치사항

- (1) 슬립업 작업 전에 콘크리트의 경화 깊이를 측정하고 탈형 후 콘크리트가 부담 하는 전(全) 하중과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, 품질,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슬립폼의 슬립업 속도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(2) 슬립업 속도기준은 구조물의 강도와 형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간당 $10\sim17$ cm 를 기준으로 하되 기온과 콘크리트 경화속도에 따라 <표 1>과 같이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.

일평균 기온(℃)	형틀 높이(mm)	1 일 슬립업량(m)	1 시간당 슬립업량(cm)
25 이상	1,250	4	17
10~25	1,250	3	12.5
10 이하	1,250	2.5~3	10~12.5

<표 1> 슬립업 속도기준

- (3) 슬립업은 전체 거푸집이 동시에 이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유압잭이 균등하게 작동하는지 관찰하여야 한다.
- (4) 슬립폼은 허용오차 범위 이상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작업대는 거푸집과 동시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거푸집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.
- (6) 슬립폼은 인양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의 경사도와 수직도를 검사하여야 하며, 시공 중에는 최소 4 시간 이내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- (7) 슬립업 중에도 각 작업대 부재 이음부의 볼트 체결 및 이음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(8) 유압잭의 고장이나 콘크리트 등의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불가 피하게 슬립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거푸집과의 부착으로 인한 균

KOSHA GUIDE C - 38 - 20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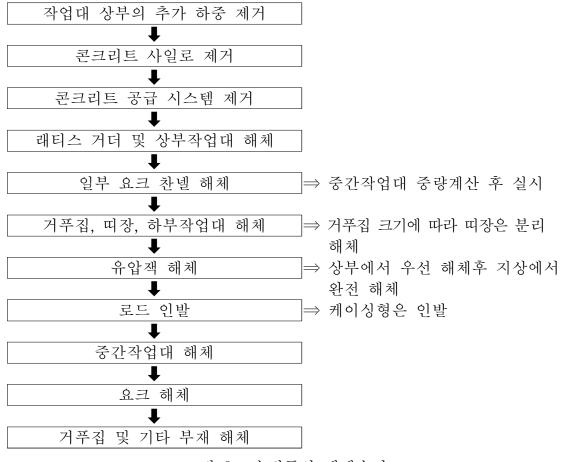
열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적정 슬립업 시간(보통 1.5~2 시간)이 경과한 후 <표 2>의 슬립업 최소기간 이내에는 슬립업 시켜야 한다.

<표 2> 슬립업 최소시간

기온(°C)	최소 기간(시간)	
25 이상	0.5	
10~25	1	
10 이하	1.5	

5.4 슬립폼 해체 시 안전조치사항

(1) 작업이 완료되면 슬립폼을 해체하여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아야 하며 해체 순서는 <그림 3>과 같다.



<그림 3> 슬립폼의 해체순서

C - 38 - 2011

- (2) 작업시작 전 작업방법, 작업순서 및 안전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- (3) 부재 인양 시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4) 고소작업을 피해 부재는 가급적 지상으로 내려 해체하고 작업반경 내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5) 상부에서 부재를 용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 비산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상부 부재 해체작업에 따라 발생되는 개구부는 방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개구부 방호조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.